

##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0. 7. 16.(금)

2.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원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원

형태근 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### 5. 회의내용

#### 가. 서면회의 사유

##### 1) 서면결의 사유

- o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의거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)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.

##### 2) 서면보고 사유

- o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의거,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고사항’에 해당됨.

## 나. 의결사항

### 1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(주)LG유플러스 - (2010-43(서)-193)

-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LG유플러스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< 승인 내용 >

상품명	상품내용	이용요금	비고
U+TV 가족형 (신설)	· TV채널 70개 이상 · VOD 2만편 이상	월 16,000원	기본형(월14,000원, TV채널 60개 이상)과 고급형(월25,000원, TV채널 75개 이상)의 중간가격대 상품

### 2)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·신고·등록·승인 절차 및 기준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43(서)-194)

-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'09. 12)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·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개선과제로 채택된 '심사비 부담 근거 삭제'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·신고·등록·승인 절차 및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#### o 주요 내용

- ①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변경등록·신고에 대한 근거 규정에 대한 문구 정리
- ② 허가 또는 승인 심사시에 소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용 등 심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신청법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조항 삭제

### 3)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(주)에이치씨엔미디어 등 3개사 - (2010-43(서)-195)

-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에이치씨엔미디어 등 3개사의 방송 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등록 및 변경등록하기로 의결함.

< (주)에이치씨엔미디어 등 2개사 등록 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(주)에이치씨엔 미디어	오앤티 (O&T)	여행·레저 (텔레비전)	김성일	(주)에이치씨엔 (100.0%)	25.5억원 (55.1억원)
	디보 플레이 스쿨 (Dibo Play School)	교육 (데이터)			
(주)알티캐스트	올로 (OLO)	교육 (데이터)	지승림	건인투자 (28.9%)	87.5억원 (236억원)

< 한국에이치디방송(주) 변경등록 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한국에이치디 방송(주)	채널원 (Channel ONE, Channel 1)	텔레비전	방송분야	정보 (방송프로그램 가이드)	버라이어티쇼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

**4)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인가에 관한 건 - (주)씨제이  
헬로비전의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합병 - (2010-43(서)-196)**

-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3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제이헬로비전의  
(주)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합병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< 합병(존속)법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 >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(10% 이상)	경영현황('09년)
종합유선방송사업, 기간통신사업	수도권, 부산, 경북 등	· (주)씨제이오쇼핑 46.01% · 자기주식 11.37% · Sable(Asia) Ltd 13.32% · AA Merchant Banking Investments Ltd 10.88%	· 자본금 154억원 · 매출액 3,294억원 · 영업이익 654억원

< 피합병법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>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(10% 이상)	경영현황('09년)
종합유선방송사업, 기간통신사업	서울 은평, 경기 부천·김포	· (주)씨제이오쇼핑 95.5%	· 자본금 191억원 · 매출액 1,037억원 · 영업이익 178억원

**5)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인가에 관한 건 - (주)씨엠비홀딩스 - (2010-43(서)-197)**

- o 「방송법」 제15조의2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3조에 의거, (주)씨엠비홀딩스의 (주)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 최대주주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**< 최다액출자자 · 최대주주 변경 내용 >**

대상 사업자명	변경 전		변경 후	
(주)씨엠비전남방송	이인석 (주)씨엠비홀딩스	50.1% 49.9%	(주)씨엠비홀딩스 이인석	51.0% 49.0%

※ 변경사유 : 지주회사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

**다. 보고사항**

**1)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**

- o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시행('10. 9. 23)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한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전부개정안을 보고 받음.

o 주요 내용

- ① 대통령령 제명을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에서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으로 개정
- ② 전기통신설비 등의 용어를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변경하고, 일부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조 문	변경횟수
전 기 통 신	방 송 통 신	안 제3조, 제31조	4
전기통신설비	방송통신설비	안 제1조외 19개 조문	57
전기통신기자재	방송통신기자재	안 제1조, 제2조	3
전기통신역무	방송통신서비스	안 제3조, 제10조, 제14조, 제23조	8
전기통신신호	방송통신콘텐츠	안 제3조, 제6조, 제13조	4
전기통신망	방 송 통 신 망	안 제3조, 제5조, 제14조	10
전기통신사업자	방송통신사업자	안 제3조, 제24조	2